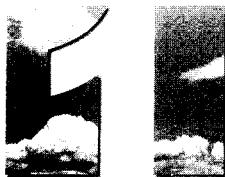


[기획_특집]

» 국내 유기축산 도입 새점검



유기축산물 인증기준(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)

유기축산물 심사사항 및 구비요건



주정재
(농림부 축산경영과)

사육장 및 사육조건

(1) 사육장은 주변으로부터의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가축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가. 충분한 활동면적이 확보되어 있을 것
- 나. 충분한 환기 및 채광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
- 다.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
- 라. 신선한 음수를 상시급여할 수 있을 것
- 마. 혹한·혹서 및 강우로부터 가축을 보호할 수 있을 것
- 바. 축사 바닥은 부드러운 구조일 것
- 사. 축산분뇨의 처리시설이 자원화방법으로 되어 있을 것

(2)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.

가. 축사조건

- 1)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.
 - ①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
 - ② 공기순환, 온·습도,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,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·환기시설을 갖출 것
 - ③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
- 2) 가축은 기후조건이 나쁘거나 가축의 건강·안전·복지가 해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주위 식물·토양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정된 조건으로 사육할 수 있다.
- 3)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.
 - ① 가축의 품종·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

기획 도자 유기축산물 심사사항 및 구비요건

- ②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요구를 고려할 것
- ③ 자연스럽게 일어서고 앓고 돌 수 있으며, 뻗고 날개짓을 하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
- 4) 축사·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.

나. 방목조건

1)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는 부분적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가축의 생리적조건·기후 조건 및 지면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을 것. 다만, 수소의 방목지 접근,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②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운 면에서도 미끄럼지 아니하고,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,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,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
- ③ 소의 경우는 개체우리를 권장하고, 가축에 대한 밧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것
- ④ 번식돈은 임신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,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한 포유기간의 모돈과 조기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kg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.

2)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, 기후조건에 따라 노천구역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
- ②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시냇물·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
- ③ 축사는 짚·톱밥·모래 또는 잔디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,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횃대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고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할 것
- ④ 산란계의 경우 국립농산물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품종, 지리적 여건 및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하여 부여한 시간의 범위내에서 자연일조시간을 인공광에 의하여 연장할 것

[기획-특집]

» 국내 유기축산 도입 깨점검

다. 자급사료 기반

- (1)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목장안에 상시 사육두수를 급여할 수 있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(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를 포함한다)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2) 가축복지가 보장되는 전제하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,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목장 이외 지역의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를 (1)의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로 인정 할 수 있다.
- (3)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에는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멸강충 등 긴급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.
- (4)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. 다만,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유기질비료를 투입할 수 있다.
- (5) 축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, 축분비료의 과다한 사용,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라. 가축의 출처 및 입식

- 1) 가축의 축종별 품종의 선택과 육종방법은 유기축산의 원칙과 일치하여야 하고, 특히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.
 - ① 산간지역·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
 - ② 가축은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, 내병성이 있을 것
 - ③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,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
- 2) 1)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축을 입식하되,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승인한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.
 - ① 질병이나 재해에 의한 가축의 집단폐사로 축군갱신이 필요한 경우
 - ② 품종을 바꾸거나 농장의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
 - ③ 가축개량을 위하여 종축을 입식하는 경우
- 3) 가축을 입식하는 경우에는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을 입식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유생산용 가축의 경우에는 성축을 입식할 수 있다.

유기축산물 심사사항 및 구비요건

마. 전환기간

1)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·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 의하여 사육하여야 한다(<표>).

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전환기간 또는 전환조건을 단축 또는 완화할 수 있다.

① 반추가축: 초지에 접근이 용이하고 조방적 사육여건을 구비한 경우

② 비반추가축: 방목지·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진 경우

2) 동일 농장에서 가축·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전환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가 2년 이상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토지이거나 또는 개간지인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.

<표> 유기축산물 생산·판매 위한 전환기간

한·육우	식 육	입식 후 12개월 또는 생후부터 출하까지 수명의 3/4
	송아지 식 육	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6개월
젖 소	원 유	착유우는 90일 경산우 또는 미경산우는 6개월
산 양	식 육	생후 6개월
	원 유	착유량은 90일, 미경산양은 6개월
돼 지	식 육	생후 6개월
육 계	식 육	일반육계: 부화 후 7주 삼계탕용 육계: 부화 후 3~4주
	알	병아리 입주 후 5개월
오 리	식 육	부화 후 10주
	알	병아리 입주 후 5개월

바. 번식방법

- 1) 유기축산농가의 여건에 맞추어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.
- 2)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을 권장하되,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.
- 3) 수정란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
[기획_특집]

» 국내 유기축산 도입 제점검

4)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

사. 사료 및 영양관리

1)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100%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. 다만,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.

① 반추가축의 경우에는 건물(乾物: dry matter)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85% 이상 급여

② 비반추가축의 경우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유기사료를 80% 이상 급여

2) 유기축산물 생산과정중 심각한 천재·지변,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)의 규정에 의한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

3)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되고, 단위가축에게는 반드시 거친 조사료를 일정량 급여하여야 한다.

4) 유기사료 및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로 급여할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5)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재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허용된 물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천연물질에 한한다.

6)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①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

② 우유 및 유제품과 어류 및 어류부산물을 제외한 동물성 사료, 특히 반추가축의 경우에는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(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됨)

③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

④ 항생제·합성항균제·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

⑤ 그밖의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·변형된 물질

아.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

1)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.

①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

②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

유기축산물 심사사항 및 구비요건

- ③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
- ④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품종의 선택
- 2) 가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.
- 3)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4) 1) 내지 3)의 규정에 의한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치방에 의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만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.
- 5) 약초 및 미량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.
- 6)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,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호르몬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수의사의 관리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.
- 7) 가축에 있어 꼬리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, 꼬리 자르기, 이빨 자르기,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마취를 실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다.
- 8)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.

자. 운송 · 도축 · 가공과정의 품질관리

- 1)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전기자극이나 대중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)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,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.
- 3) 도체 및 원유 등 당해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, 유기적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.

[기획_특집] >>> 국내 유기축산 도입 깨점검

- 4) 생축의 저장 및 수송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5) 유기축산물의 출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서 안전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- 6)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폐방자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. 다만,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.
- 7)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,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
차. 축산분뇨의 처리

- 1) 가축사육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2) 돼지 사육농가는 축사구조를 분과 놀를 분리·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발생되는 분뇨는 완숙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.
- 3) 소·돼지의 운동장에는 놀의 집수조를 설치하여야 하고, 분은 매일 수거처리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4)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5) 축분퇴비 및 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, 장마철에는 시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⑤